의안검토보고서

1. 제 출 자 : 대전직할시장

2. 건 명: 대전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건요지 : 별첨참조

4. 검토의견 : 별첨참조

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1994년 11월 일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류기 현 大田直轄市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1994 . 11 .

産業建設委員會 專門委員

大田直轄市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檢 討 報 告

이 條例案은 1994年 10月 24日 大田直轄市長으로 부터 提出되어 1994年 10月 26日 當委員會에 回附되었음.

1. 提案理由

道路法 施行令의 改正 (1994. 9. 16 大統領令 第14382號)으로 因하여 電氣管 및 電氣通信管에 대한 占用面積 算定方法이 改善됨에 따라 對象物의 占用 경우에 지켜야할 基準을 정하므로서 道路敷地管理에 萬全을 기할 수 있는 根據를 마련하려는 것임.

2. 主要骨子

電氣管 및 電氣通信管의 設置를 위하여 道路를 占用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각각의 管의 直徑을 합한 것을 그 占用面積으로 算定하던 것을 앞으로는 管을 다발로 묶어 埋設하는 경우에는 그 다발 全體를 하나의 管으로 보아 占用面積을 算程하도록 함으로써 道路占用料의 算程方法을 合理的으로 改善함.

3. 檢討意見

- 今番에 改正하고자 하는 大田直轄市 道路占用料 徵收條例中 改正條例案은 1994年9月6日자로 大統領令 第14382號에 依據 道路 法 施行令이 改正됨에 따라 關聯 條例의 內容을 改正하는 事案 임.
- 改正 條例案의 主要內容을 報告드리면, 道路占用物의 種類란에 下水道管 다음에 電氣管, 電氣通信管을 새로 挿入하며, 이에 대한 道路占用面積 算定方法을 改善하는 事項으로써 電氣管 및電氣通信管의 設置를 위하여 道路를 占用하는 경우 對象物의占用에 대한 單價適用을 지금까지는 각각의 管의 直徑을 합한 것을 그 占用面積으로 算程했으나 앞으로는 管을 다발로 묶어 埋設하는 경우에는 그 다발 全體를 하나의 管으로 보아 占用面積을 算程하도록 함으로써 道路占用料의 算定方法을 合理的으로 調整 및 改善시키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그 동안 韓國電力 및 韓國電氣通信公社에서 埋設하여 管理해오던 管에 대한 占用料는 埋設의 基本目的이 公共의 便益增進을 위해 設置된다는 점을 勘案 負擔金額이 大幅的으로 減額이 될 것으로 豫想이 됨.
- 그러나 占用料 賦課方法의 改善에 따라 現在의 施設物에 대한 賦課를 關聯 圖面資料에 依據 다시금 算出을 하여야 하나 細部 的인 資料의 未確保등으로 正確한 算出을 期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豫想이 되는 바, 關聯部署에서는 該當機關으로 부터 資 料를 早速히 引受하여 賦課에 차질이 없도록 萬全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思料가 됨.